
공사 개요

[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]

2025. 11. 10 ~ 2028. 05. 09

원양종합건설(주)

가. 건설공사의 개요

1) 공사개요서

공사개요서						
공사명	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					
현장소재지	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 십자굴 공유수면 일원					
공사기간	2025. 11. 10. ~ 2028. 05. 09.	공사금액	₩11,577,909,870(부가세포함) 낙찰율 : 82.813%			
시공자	회사명	원양종합건설(주)		전화번호	053-983-0671	
	대표자	유덕수				
	현장대리인	최정철	전화번호	010-2253-4526		
	주소	본사 : 대구 동구 화랑로 423,2층 현장 :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-91				
발주자	회사명	인천지방해양수산청		전화번호	032-880-6349	
	담당자	장윤지				
	주소	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-1				
설계자	회사명	향도엔지니어링		전화번호	010-5456-1109	
	대표자	국윤식				
	주소	전북 군산시 대학로10				
감리자	회사명	향도엔지니어링		전화번호	010-9462-0891	
	대표자	이창원				
	주소	인천 중구 북성동1가 3-7				
공사개요	대상공사	구조	개소	굴착깊이(M)	최고높이(M)	연면적(M2)
	지반개량공	-	1	-	-	-
	우수공	콘크리트	1	-	-	-
	오수공	-	1	-	-	-
기타특수 구조물 개요	없음					
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	5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. 천공기(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 --> 해당(지반개량공사) 5의 2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.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--> 해당(오수공)					
심의 및 검토대상여부	지하안전영향평가					해당없음
	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굴토(구조)심의 실시					해당없음
	설계안정성검토(DFS)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 중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.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					해당있음
	취약공종					해당없음

○ 세부 공사개요

시설명	시설규모	비고
우수공	• 관로부설(각종) L = 1.0km, PCBOX(2.5×1.5) L=0.45km	
상수공	• 관로부설(각종) L = 1.0km	
오수공	• 관로부설(각종) L = 0.7km	
포장공	• 아스콘포장 A=168a, 보도포장 A=66a	
지반개량, 조경 등	• 1식	

2) 위치도

○ 현장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 십자굴 공유수면 일원



축척 : 1/25,000

■ 공사현장의 주변현황도



사진 1

안전관리계획서

[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]

2025. 12.

원양종합건설(주)

다) 정기안전점검
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.

(1) 정기안전점검의 의뢰

- 건설안전 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(2)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사항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,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항목

- 1)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 - ① 공사 관련 기본자료 검토
 - ② 시공 상태 점검
- 2) 공사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 - ① 시공도면의 적합성
 - ② 공법 선택의 적합성
 - ③ 시공도면의 현장비치 및 활용상태
 - ④ 공사 시방서에 대한 숙지 및 전달상태
 - ⑤ 품질시험 및 자재관리
- 3) 인접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 - ① 공사 착공 전 영향평가 및 검토
 - ② 진동,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대책
 - ① 피해 예상 건축물 및 구조물의 관리
- 4)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
 -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 점검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.

(3) 정기안전점검 시기

건설공사 종 류		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				
		1차	2차	3차	4차	5차
교 량	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하부공사 시공시	상부공사 시공시	-	-
터 널		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	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	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	-	-
댐	콘크리트댐	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	굴착 및 기초 공사 시공시	댐 축조공사시공시(하상기초완료 후)	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	댐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	필댐	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	굴착 및 기초 공사 시공시	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	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	댐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하천	수문	가시설공사완료시(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)	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	-	-	-
	제방	하천바닥 파기, 누수방지, 연약지반 보강, 기초처리공사 완료시	본체 및 비탈면 흩쌓기공사 시공시	-	-	-
하구둑		배수갑문 공사중	제체 공사중	-	-	-
상하수도	취수시설, 정수장, 취수가압펌프장, 하수처리장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공사 초.중기단계 시공시	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	-	-
	상수도 관로	총 공정의 초.중기 단계 시공시	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	-	-	-
항만	계류시설	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	제작 및 거치공사, 향타공사 시공시	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	속채움 및 뒷채움공사, 매립공사 시공시	-
	외곽시설(갑문, 방파제, 호안)	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, 사석공사 시공시	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	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	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	-
건축물	건축물	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공사 초.중기단계 시공시	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	-	-
	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	총 공정의 초.중기 단계 시공시	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	-	-	-
폐기물 매립시설		토공사 시공시	총 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	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	-	-
지하차도, 지하상가, 복개구조물		토공사 시공시	총공 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	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	-	-
도로.철도.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	옹벽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 공사 시공시	-	-	-
	절토 사면	비탈면 깎기 완료후	비탈면 보호공사 시공시	-	-	-
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	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되메우기 완료후	-	-	-
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		총 공정의 초.중기 단계 시공시	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	-	-	-

건설공사 종 류	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					
	1차	2차	3차	4차	5차	
건설 기계	천공기 (높이 10미터 이상)	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	천공 작업 말기단계시	-	-	-
	항타 및 항발기	항타·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·항발 작업시	항타·항발 작업 말기단계시	-	-	-
	타워크레인	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	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	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	-	-
가설 구조물 (시행 령 제101 조의 2)	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	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	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	-	-	-
	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	최초 설치 완료시	설치 말기단계시	-	-	-
	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	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	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	-	-	-
	터널 지보공	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	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	-	-	-
	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	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	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	-	-	-
	브라켓 비계	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	브라켓 비계 설치시	-	-	-
	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(10m 이상)	최초 설치 완료시	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	-	-	-
	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	조립·설치 최초 완료시	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	-	-	-

※ [별표 1]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·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